

의안번호	2212388
의 퇴 인	김우영의원
회 답 일	2025.11.20.
추계번호	25B46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000만원(연평균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 (안 제44조의10)	40	—	—	—	—	40	8

주: 1.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 사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계획(안)을 참고하고, 추계기간 동안 교육 콘텐츠의 개선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 내용·방식 및 실시비용, 교육 콘텐츠의 개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0(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4조의10(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상 교육 실시	○	• 유사사례 참조
		이용자대상 교육 실시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교육 대상의 수, 교육 실시 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및 장소, 교육 과정의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¹⁾에 대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의 사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추계함

1) 개정안에 따라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포함함

○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교육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별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 및 시행령²⁾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교육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교육대상을 ‘해당 교육을 희망³⁾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더라도 동일한 교육과정 및 방식(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실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2) 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다만,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안 제44조의10)

- 현행법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⁴⁾의 유통방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표 2]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실시 근거	• 현행법 제44조의9 및 시행령 제35조의2
실시 방법	• 인터넷 사이트(edu-illegalfilmout.kr)를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 대상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교육 내용	• (1차시) 불법촬영물등 정의 및 관련 법령 • (2차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3차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투명성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4차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심의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사례 • (5차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제도 총정리
교육과정 개발비용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비용)	• 40백만원* *8백만원(회차당 콘텐츠 개발비용) × 5차시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본 추계에서는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 사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불법정보⁵⁾ 유통방지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계획(안)

구 분	계획(안) 내용
실시 방법	• 인터넷 사이트(edu-illegalfilmout.kr)를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 대상	•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이수
교육 내용	• (1차시) 불법정보의 정의 및 관련 법령 • (2차시) 불법정보 유통방지 관련 현행 규제 체계 • (3차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심의 규정 및 심의사례 • (4차시) 국내 및 해외 불법정보 동향 분석 • (5차시)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 총정리
교육과정 개발비용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비용)	• 40백만원* 예상 *8백만원(회차당 콘텐츠 개발단가) × 5차시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5)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000만원(연평균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	40	-	-	-	-	40	8

주: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 사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계획(안)을 참고하고, 추계기간 동안 교육 콘텐츠의 개선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 내용·방식 및 실시비용, 교육 콘텐츠의 개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현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 사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교육 실시계획(안)을 참고하고, 추계기간 동안 교육 콘텐츠의 개선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 내용·방식 및 실시비용, 교육 콘텐츠의 개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